

‘막말’ ‘협박’ ‘폭력’ 기자라도 안 된다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 폭력마저 불사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짓(!)을 감행하는 것인가. 아마도 칼보다 강하다는 펜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리지만, 범죄자의 칼은 사람을 해친다. 막말하고 폭행·협박하는 기자의 손에 들린 펜은 사람 죽일 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주어진 힘을 믿고 선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Q 기자로부터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는 막말을 들었다. 자신들이 우습냐며 “홍보라인을 폭파시킬 것”이라거나 “후회할 거야”라고 위협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기자도 있다. 물론, 홍보담당자들 중에는 이 정도의 폭언과 막말쯤은 약과로 여기는 동료도 있다.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아무리 기자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A 질문에 언급된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협박이나 모욕, 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겠다. 일단, 말로 그쳤는지, 물리적 행사로까지 나아갔는지가 중요하다. 신체

적 접촉을 동반하는 물리적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violence)’이 된다. 물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위법한 물리적의 행사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폭행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부딪칠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킨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다. 물리적 행사로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상해(injury)’가 된다. 상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그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

폭언이나 막말, 위협과 같이 문제된 행위가 언어적인 것이라면 대체로 ‘협박’ 또는 ‘모욕’이 문제된다. 협박과 모욕은 장래에 해악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여



부로 나뉜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래서 장래에 해악이 있을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적어도 암시했다면 ‘협박(threat)’이 된다. 고지한 해악이 합법적 권리행사의 일환이거나 범죄가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상관의 비위 사실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상부에 제출하겠다고 위협한 행동을 협박으로 보았다. 다만,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서 다소 막연한 해악의 고지에 불과한 경우(‘두고 보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라든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협박(의무 불이행 시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경우)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회장 얼굴 사진 박고 기사 쓰겠다’거나 ‘홍보라인을 폭파하겠다’ 등의 발언들은 협박에 해당될테지만 ‘정신 차리게 하겠다’, ‘후회할 것이다’는 정도의 위협적 발언만으로는 협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장래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폭언이나 막말은 ‘모욕(insult)’에 가깝다. 모욕이 ‘된다’ 하지 않

고 ‘가깝다’ 한 것은 모욕죄 요건이 제법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단, 모욕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공연성). 독립된 공간에서 기자와 홍보담당자만 자리하고 있을 때 막말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 ‘개**’ 같은 단순한 욕설로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해당 발언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모욕은 명예를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모욕으로 인정된 발언을 열거해보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 ‘짭새’, ‘미친개’, ‘창녀’ 등이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협박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후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면 보다 엄중한 죄들, 예를 들어 ‘강요’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강요’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포괄적인 범죄이고, ‘업무방해’는 문자 그대로 업무(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기업·기관의 홍보 관련 일들은 대체로 업무성이 인정될 것이다. ☺

모욕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듣보잡’, ‘미친개’, ‘창녀’
폭행죄	물리력의 행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 물건을 던지거나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협박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장 얼굴 사진 박고 기사 쓰겠다’, ‘홍보라인을 폭파하겠다’
강요죄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나 협찬 요구
업무방해죄	위계·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정된 광고 집행, 사업 추진 저지